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4,582,560	6,437,477
일반회계	201,757,111	6,052,713
특별회계	12,825,449	384,763
기타특별회계	12,825,449	384,76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1,310	14,13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16,839	12,505
주차장특별회계	9,887,854	296,63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05,001	18,150
기반시설 특별회계	12,593	378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1,431,852	42,95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671,72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금번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